

#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관련 질의 회신

2021. 7. 법무심의관실

## ① 검토 배경

- '21. 3. 경기도에서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집합건물법'이라 함)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

## ② 질의 내용 및 관련 규정

-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

### 「집합건물법」

**제24조(관리인의 선임 등)**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,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.

③ ~ ⑥ (생략)

## ③ 검토의견

-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관리단을 대표함(제24조 제1항)
-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,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님(제24조 제2항)
  - 즉,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,
  - 건물 관리의 수탁을 업으로 하는 법인(관리회사)이라 할지라도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님

※ 단,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음 ☐